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F-1-22~24)

신청 요건:

F-1-22~24: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을 위한 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몽골 국민 또는 거주자는 비자신청센터를 통하여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1년 이내 단수 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증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준비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사증신청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동안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3. 무범죄증명서(만18세이상 60세 미만, 최초 방문자에 한함)
4.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19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출생증명서(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 신분증사본 제출)
5. 결핵 진단서(당관 지정기관 발행)
6.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7.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신분증명서)
8.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9.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 근로자 입증 서류(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10.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11. 신원보증서
12.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3.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